#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50

발의연월일: 2024. 7. 17.

발 의 자:최보윤·강선영·김 건

백종헌 · 김소희 · 한지아

조배숙 • 박준태 • 박충권

김위상 의원(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 운영, 장애인학대 등에 대한 신고의무 및 장애인에 대한 각종 금지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폭행, 상해, 횡령, 사기 등 장애인학대는 끊이지 않고 있음.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2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1,186건으로 2018년 처음 집계한 889건 대비 33.4%가 증가하였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건수와 장애인학대 의심 사례도 각각 35.5%, 43.9% 증가한 4,958건과 2,641건으로 나타나는 등 장애인학대가 중대한 사회문제로 고착화됨에따라,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장애인을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학대를 인지하고 신고해야 할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

학대 피해에 따른 응급조치, 사후관리 등을 전담하고 있는 장애인권익 옹호기관의 설치를 확충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학대 예방·방지 의무를 규정한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 함으로써 장애인학대 예방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 장애인 학대를 근절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에 소속된 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기관의 장과 그 운전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원고용이 실시되는 장애인의 직무수행을 지도하는 자 및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으로 확대(안 제59조의 4제2항)
- 나.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기준에 장애인 인구 수와 면적 등을 고려하여 1개소 이상 설치 명시(안 제59조의11제2항)
- 다.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가 그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의 실시를 노력하도록 함 (안 제59조의20 신설).

법률 제 호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2항에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3. 제60조의4제4항에 따른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에 소속된 자
- 2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기관의 장과 그 운전자
- 2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원고용 이 실시되는 장애인의 직무수행을 지도하는 자 및 같은 법 제19 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제59조의11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둔다"를 "지역별 장애인 인구수와 면적 등을 고려하여 1개소 이상 둔다"로 한다.

제59조의2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0(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① 범국민적으로 장애인학대의 예 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학 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이 포함된 1주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2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	
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	
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 22. (생 략)	1. ~ 22.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u>23. 제60조의4제4항에 따른 시</u>
	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
	<u>단에 소속된 자</u>
<u>&lt;신 설&gt;</u>	2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
	진법」 제2조에 따른 특별교
	통수단을 운행하는 기관의
	<u>장과 그 운전자</u>
<u>&lt;신 설&gt;</u>	2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
	<u>와 근로자, 같은 법 제13조</u>
	에 따라 지원고용이 실시되
	는 장애인의 직무수행을 지

- ③ ~ ⑧ (생 략)
-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 의 설치 등) ① (생 략)
  - ②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 별자치도에 둔다.
  - 1. ~ 6. (생 략) ③·④ (생 략) <신 설>

도하는	자 5	및 같	은	법	제19
조의2에	따른	를 근.	로지	원역	인

<u> </u>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역별 장애인 인구 수와
면적 등을 고려하여 1개소 이
상

- 1. ~ 6. (현행과 같음)
- ③ ④ (현행과 같음)

제59조의20(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① 범국민적으로 장애인학 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 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6월 22 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이 포함된 1주일을 장애인학 대 예방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 애인학대 예방의 날의 취지에

<u>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u> 록 노력하여야 한다.